

제 1493 호
1990 6.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고
편집인 : 공보관 유 천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권판소요조례 3

◎ 조 례
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4
제2618호 서울특별시시사면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1
제2619호 서울특별시토목시업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11
제2620호 서울특별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12

◎ 규 칙
제2338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12

(이런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2339호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규칙폐지규칙	12
제2340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해시행규칙중개정규칙	12
제2341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세규칙중개정규칙	13
● 훈 령		
제 702 호	서울특별시경보도의일원화규정폐지규정	14
제 703 호	서울특별시공보원규정폐지규정	15
● 예 규		
제 524 호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	15
● 고 시		
제 151 호	수입단미사로성분등록	19
● 공 고		
제 311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	19
제 317 호	K·S표시허가취소	19
제 318 호	품질관리등급사정취소	20
제 319 호	서울특별시관내도시설계구역지정공고	20
제 32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20
제 321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21
제 323 호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획변경인가및공사완료공람공고	21
제 324 호	관인재교부공고	21
● 구 고 시		
제 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	22
제 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관악)	22
제 3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어린이공원)변경및(사회복지시설)신설 지적승인(관악)	23
제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서)	23
제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	23
제 1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서)	24
제 17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송파)	24
제 4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설계변경(구로)	24
제 62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중랑)	25
● 구 공 고		
제 46 호	재개발사업에관한공사완료공고(성동)	26
제 51 호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마포)	27
제 6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송파)	27
제 79 호	도시공원정용허가(동작)	28
● 사 령		

공 문 시 행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시정01754-126

(731-6551)

1990. 6. 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물품관리 전환 소요 조희

1. 시정개발담당관실에 보유하고 있는 법집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희하니 희망부서에서는 '90. 6. 15까지 관리전환을 요청하기 바람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으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것임.

법집 관리전환대상 물품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 전결)

수신처 시산하 전기관.

관리전환 대상 품목 현황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부가액	물품의 상태	불용 사유	회계명	
7110-009	책상	철재(2종4급용)	각	12	82,000				
7110-003	책상	철재 4종	각	5	61,200				
7110-005	의자	4급용	각	10	미상				
7110-005	의자	4B	각	5	16,301				
7110-002	캐배넷	1호	개	10	47,409				
7110-006	축판	90×60mm	개	6	15,000				
7105-013	용접셋트	상석의자, 탁자, 보조협탁포함	개	7	540,273				
7110-023	책상	180×180×210mm	개	1	129,500				
7195-016	칸탁이	180×180mm	개	9	미상				
7240-029	옷걸이	H. 165	개	1	18,150				
7440-300	컴퓨터	8 Bit T.G20 (엘렉스)	대	1	1,650,000				
7440-380	보조기억장치 (Computer Driver)	8 Bit용	개	1	100,000	요정비			
7110-020	파일캐비넷	철재 5단	개	2	31,115	요정비			
7110-003	책상	타자용	각	1	140,000	요정비			
7110-005	의자	4B	각	1	21,000	요정비			
7110-005	의자	4급용	각	3	미상	중고			
7430-025	워드프로세서	Q.W 1000M	대	1	9,185,000	요정비			
3610-237	전자복사기	DT-1500	대	1	2,332,000	불용			
7430-025	워드프로세서 (본체)	HQ-300	대	1	미상	불용			
8430-025	자동문서작성기 (워드프로세서)	르모	대	1	1,070,000	중고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5. 28

서울특별시시장 고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
항제3호 및 동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
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민이 시행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
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
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나 도시
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 (이하 "대한주택공사등"이라 한
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특별제한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예방, 복구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정한 기준
의 범위안에서 건축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권리변동의 신고) 지구안의 토지 또
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권리를
가진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후의
소유권 기타권리의 변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권리변동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거환경개선계획

제5조(토지이용계획) ①법 제6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의
고도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
역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구안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는 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그 활용여부를 검토하고, 지구 주변의 도
시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정비계획) ①법 제6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도시
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시설에 한
하되, 동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
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
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통행체계상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도로를 환
용하되, 통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지구 주변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자
동차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건설계획) 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국·공유지가 있는 지역으로
서 기존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내
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의 3분의2이상 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건축물의 개량계획) ①현지개발사업
대상 건축물은 법 공포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이 판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1985년 6월 30일이전에 건축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확인은 부허가건축관리대상·항공촬영사진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납부실적등에 의한다.

③현지개발사업대상 건축물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대상건축물의 개량범위와 방법은 건축물소유자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정도를 참작하여 개량의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동이용 시설계획등) ①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은 지구안 또는 지구주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절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관한 계획은 지구주민의 소득수준 및 노동인구의 규모등을 참작하고 소득원사업시설의 배치가 토지이용계획에 상응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분할계획) ①영 제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지구안에서 현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거나 지구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일단의 주거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형여건과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법등의 적용의 특별

제1절 건축법 적용의 특별

제11조(거실의 조도기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를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용도구분별 조도기준의 각2분의1이상이 되는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례제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연소) 건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례제한 건축물 및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하층의 설치) 지구안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의3와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20분의1(그 면적이 각종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종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구안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방,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축벽에 대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p>1. 열관류율의 값: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 (특별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 이하)</p> <p>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1이상(특별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2이상)</p>	<p>제2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41조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 건축물의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절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별</p> <p>제2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를 받거나 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7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4제2호 다목,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 제27조,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지구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건폐율) 지구안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p>	<p>제3절 주차장법적용의 특별</p> <p>제25조(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구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제곱미터로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제한건축물 또는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주택: 건축물 연면적 250제곱미터 당 1대 2.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 3.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p>제20조(용적율) 지구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퍼센트이하로 한다.</p>	

<p>건축물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p> <p>제 4 절 도시계획법적용의 특례</p> <p>제26조(도시계획시설기준) 지구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7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등)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및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는 각각 제18조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 장 사업의 시행</p> <p>제28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시장이 시행한다. 2. 단독주택 또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등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등은 시장 또는 대한주택공사등이 각각 시행한다. 3.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시장이 각각 시행한다. 5. 공동이용시설사업 및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p>시설의 종류에 따라 당해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장은 당해지역 및 지구의 특 제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29조(손실보상등)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및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률이 의한다.</p> <p>②지장물이 무허가건물이 경위의 그 입주자등에 대한 보상은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다.</p> <p>③제1항의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주위의 특별분양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0조(토지등의 평가) ①제29조에 의한 손실보상 및 영 별표3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 5 장 양여토지의 관리처분</p> <p>제31조(토지의 매수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발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p> <p>제32조(토지의 대각규모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p>
--	---

<p>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기존의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65제곱미터이하</p> <p>2. 주거용외의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 : 165제곱미터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이하</p> <p>②제1항의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모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심한 경사지역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p> <p>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변경되는 토지</p> <p>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후 남은 토지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p> <p>③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p> <p>제33조(토지의 매각방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은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토지의 매각에 관하여</p>	<p>이들 준용한다.</p> <p>제34조(대금의 납부) ①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5분의 이자를 간신히하여 2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p> <p>제35조(재산의 대부) 시장이 양여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대부금 납부시기 및 계약의 해지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p>
--	---

[별 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제18조관련) (단위 : %)

구 모	연면적6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	특례제한건축물	
		연 면 적 85제곱미터이하	연 면 적 85제곱미터초과
건축 행위			
신축(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증·개축등 기타	80 이하		

[별지서식]					
권 리 신 고 서					
신 고 인	등기상주 소				주민등록번호
	현거주지				성 명
권 리 의 내 용	권 리 의 종 류		권 리 의 대 상	토 거	지 번
					면 적
				건축물	소 계 지
					면 적
기 타					
<p>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권리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성명 ①</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기타의 서류</p>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사편
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18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들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과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중
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및 연구간사
각 1인을 들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계장이 되며, 연구간사는
연구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연
구간사는 위원회의 연구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와 연구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위원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중견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계
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목
시험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19호

서울특별시도목시험에관한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도목시험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상수
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20호

서울특별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당, 여비 기
타 수질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5. 28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38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동항 제2호중 "3인"을, "4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및 주택국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회 직무대행) ①위원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족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
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4
급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규칙폐지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39호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규칙
폐지 규칙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6. 1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40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종 류	규 격	색 채
제2조들 다음과 같이 한다.			300원	가로25㎝×세로22㎝	질 은 회 색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모양) 조제			350원	"	황 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종류는			450원	"	하 늘 색
10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500원	"	자 색
300원, 35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550원	"	얇 은 갈 색
75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의 17종으로			600원	"	노 탕 색
하고 그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750원	"	질 은 남 색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000원	가로37㎝×세로25㎝	적 색
(도형제1호)를 삭제한다.			5,000원	"	얇 은 창 색
			10,000원	"	청 투 색
부 칙			계	17종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0. 6. 1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증지와 병용한다. [별 표]					
수입증지규격 및 모양			◎서울특별시규칙제2341호		
종 류	규 격	색 채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규칙중 개정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0원	가로25㎝×세로22㎝	갈 색			
20원	"	주 황 색			
50원	"	녹 색			
60원	"	홍 색			
100원	"	남 색			
200원	"	후 색			
250원	"	다 갈 색			
회 계 직 명			지하철건설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1. 장 수 관			지하철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2. 분임장수관			총 무 부 장		
3. 수입금출납원			재 정 과 장		
4. 경 리 관			본 부 장		
5. 분임경리관			총 무 부 장		

회 제 적 명	지하철건설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6. 지 출 원	경 리 과 장
7. 물품관리관	총 무 부 장
8. 분입물품관리관	각 실 · 부 장
9. 물품출납원	자 재 과 장
10. 분입물품출납원	각실 · 부의 주무과장
11.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경 리 과 장
12.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경 리 과 장
13. 채권관리관	본 부 장
14. 분입채권관리관	각 실 · 부 장
15. 임시전도자금출납원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p>제8조 본문중 "지하철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를 "본부"로 한다.</p> <p>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9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부의 분입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정금액5천만원미만의 공사 또는 물품제조 2. 예정금액 2천만원미만의 물품구매 3. 보수·여비·급탕비·제세공과금·판공비·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자금전도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의 점사자·집수자 및 입회자의 지정 5.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지시 및 조달품목의 조달요청 <p>제37조제1항중 "주관과장"을 "주관부장"으로 한다.</p> <p>제64조제1항중 "각과장"을 "각 실·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과장은 전호의"를 "각 실·부장은 제1항의"로 한다.</p> <p>제66조중 "각 과장"을 "각 실·부장"으로</p>	<p>한다.</p> <p>제68조제1항중 "유용할" 수 있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용할"수 있다로 한다.</p> <p>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 제71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중 "각 과장"을 각각 "각 실·부장"으로 한다.</p> <p>제100조중 "과과"를 "각 실·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훈 령</div>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정보도의입원화규정매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2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고건 ①</p> <p>◎서울특별시훈령제702호</p> <p>서울특별시정보도의입원화규정매지규정</p> <p>서울특별시정보도의입원화규정은 이표</p>
---	--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보원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

●서울특별시훈령제703호

서울특별시공보원규정폐지규정

서울특별시공보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에 규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5.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⑩

●서울특별시예규제524호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서울특별시 소속1급사업소에서 서울특별시 시정과 관련한 대시민 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보물 제작심의 위원회 구성등) ①

시정 홍보물의 발간계획, 제작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시민생활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정보관리과 전현직 언론인 또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또는 기타의 사유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2. 기타 중위손상으로 위원으로써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홍보물 제작(기획, 편집,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등

제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p>제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p> <p>②간사는 홍보계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관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5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및 홍보 등)</p> <p>①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한다)은 홍보물 제작 방침 결정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홍보물 제작 심의신청을 공보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②주관과장이 공보관에게 홍보물제작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간행물: 신문, 화보, 팸플릿, 리플렛, 전단, 스티카 등 2. 시청각 홍보물: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 3. 전시홍보물: 현판, 아취, 락, 현수막 등 4. 기타홍보물: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등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과장은 다음각호의 경우물에 대하여는 홍보물제작 심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홍보물 및 제작의뢰하는 홍보물 2. 정기간행물 	<p>④제1항의 홍보물제작심의 신청을 받은 공보관은 위원회 심의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상경하여야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공보관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다고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즉시 주관과장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제6조(홍보물 제작설명)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p> <p>제7조(홍보물제작의뢰) ①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사전협의물 거쳐 홍보물 제작을 공보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한 홍보물제작을 의뢰하는 주관과장은 홍보물안(관련자료포함)을 공보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소요예산을 조치하여야 한다.</p> <p>제8조(홍보물 제작계획서 제출등) ①주관과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익년도 홍보물 제작계획서를 공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주관과장은 제1항의 홍보물 제작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홍보물 제작계획 변경 통보서를 공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144

(별지제1호서식)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서

1. 홍보물명 및 종류
2. 내 용
3. 제작형태

홍보간행물	시청각홍보물	전시홍보물
지 질	색 상 (원컬색, 흑색)	수 량
지 면	소요시간	규 격
수 량	수 량	색 도
인쇄방법	규 격	기 타
색 도	기 타	
기 타		

4. 소요예산액 :
 5. 제작예정일 :
 6. 배부(사용)계획 :
- 첨부 : 홍보물(안)

(별지제2호서식)

홍보물 제작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 업 명	심의일자	주관과
홍보물명	심 의 결 과	
기 타		

제1493호 시 1990. 6. 1 31-17 보

(별지제3호서식)

홍보물 제작 계획서

① 사업명	② 홍보 물명	③ 종 류	④ 제작 목적	⑤ 대상 요지	⑥ 제작 방법	⑦ 소재 요 (원료)	⑧ 제작 예정일	⑨ 배부 기간 (사용) 월	비 고

- 작성요령 ①교동대책, 상수도 수질보존, 시민식수등 ②제목
(예 시) ③소재자, 컬러넷, 리후넷, 건단, 등 제작 종류
④수북내용 간략히 (개조식)
⑤홍보간행물: 지질, 지면, 수량, 인쇄방법, 색도 등
시청각홍보물: 색상(천연색, 흑색), 소요시간, 규격
등 전시홍보물, 수량, 규격, 색도 등
⑥배부대상: 전시민, 교부분야, 위생업소종사분야 등

(별지제4호서식)

홍보물 제작계획 변경 통보서

사 업 명	홍 보 물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종 류	제 작 방 법	제 작 예 정 일	종 류	제 작 방 법	제 작 예 정 일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51호

수입단미사로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단미사로의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28

서울특별시장

수입단미사로성분등록내역

수입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질	수분	조섬유	조회분
대주상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0-29	임의재	나 01-17	단미사료 (수입사료)	발효사료 (졸사)첨가용	배합사료	17.5% 이상	15.0% 이하	8.0% 이하	9.0% 이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311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해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31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영 업 정 지 정지일자	영 업 정 지 정지기간	영 업 정 지 해제일자	근 거 법 령
82-11	삼원기업사	임휘일	강서 염창동 261-4	'90. 2. 21	'90. 2. 21	'90. 5. 2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의3
86-400	(주)삼원주택	"	"	"	"	"	"
83-72	유림주택(주)	최윤상	강서 화곡동 903-3	"	"	"	"

●서울특별시공고제317호

K.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를 취소하고 등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90. 5. 25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업체명 : (주) 천품펌프
2. 대표자 : 권연정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9-23
4. 규격번호 : KSB 7501
5. 규격명 : 소형볼브루 펌프
6. 종류·등급 : 80mm 이하
7. 처분사유 : 폐업
8. 취소일자 : '90. 5. 25

<p>◎서울특별시공고제318호</p> <p>품질관리등급사정취소</p> <p>품질관리 등급사정 공장인 동양기업사에서 등급사정을 자진반납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취소하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26</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다 음</p> <p>1. 사 정 번 호 : G가 2갑-105 2. 사 정 등 급 : 2갑등급 3. 사 정 공 장 명 : 동양기업사 4. 대 표 자 : 양영식 5.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6-25</p>		<p>6. 사 정 상 품 명 : 유아용삼륜차, 아동용 이륜자전거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 '90. 5. 26</p> <p>◎서울특별시공고제319호</p> <p>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p> <p>1.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 목동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건축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2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지	구	위	치	규	모		
목동중심지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내 19개블록	면적4km	면적565,985.3㎡		
<p>(도시설계 주요내용)</p> <p>○대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대지분할권장선, 대지분할 가능선, 대지교환</p> <p>○건축물에 관한 사항 높이, 용도,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p> <p>○육외공간에 관한 사항 주차출입구, 주차위치, 공공조경, 공공용지</p> <p>○통로에 관한 사항</p>			<p>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통로 (도시설계도면 및 구역도) : 생략</p> <p>◎서울특별시공고제320호</p> <p>전문건설업 양도인가</p> <p>건설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2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내역							
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인가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설비공사업 82-12-46	삼성엘리베이터 (주)	이재균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84-15	광명산업 (주)	윤관섭	인천 남구 주안 4동 253-6	'90. 5. 28

●서울특별시공고제321호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공고합니다.

1990. 5. 28

서울특별시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내역

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인가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상호	대표자	소재지	
토공사업 82-02-321	대기건설 건설	정기진 손근호	중구 필동 1가	(주) 한성건설	김태준 김한성	경북 포항 시 대도동	'90. 5. 28
철근콘크리트공사 82-10-285	(주)		21-12		이명수	158-26	

●서울특별시공고제323호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공사완료 공람공고

1. '68. 1. 23사업시행인가되고 '71. 4. 30 환지예정지 지정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3조, 제55조 제61조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환지계획변경과 공사완료 시행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14일간 보입니다.

가. 환지계획변경 내용

- 확정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환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변경
- 민원요청에 의한 환지변경 처리
- 환지계획 변경 조서: 별첨

나. 공사완료 내용

- 사업명: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 시행자: 서울특별시
- 시행기간: 1968. 1. 23 -
- 공사시행 내역
 - 토 공: 4, 432,136㎡
 - 배수공: 26,341㎡
 - 포장: 320a
 - 상수도공: 6,900㎡

- 지장물보상: 410동
- 묘지: 1,500기
- 기타이전비: 1식
- 사업비 재원별 내역(별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함 기타 미수령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5. 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324호



관인재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산하 "성북경찰서장"의 관인용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5. 29

서울특별시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6월 5일
2. 관인 재교부 내역: 따로붙임

	신 규	계 기
인 영		
공인명	(성북경찰서장인)	(성북경찰서장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구 고 시</p> </div> <p>◎서초구고시제3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30 서 초 구 청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자 : 한국과학기술원 제2직장주택조합의 1개 주택조합 대표 조합장 송영석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위치 : 서초구 잠원동 123번지의 37필지 나. 대지면적 : 9,566.02㎡ 다. 건축면적 : 1,877.50㎡ 라. 건축연면적 : 27,280.95㎡ 마. 건설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9, 10, 15층, 1동 22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0. 6. - 1991. 10. <p>◎관악구고시제7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 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00호 ('89. 11. 21) 및 관악구 고시 제144호 ('89. 11.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제6조와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p style="text-align: right;">1990. 5. 관 악 구 청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66의66-산63의89간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3.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관악구 봉천6동 산667의 55호 성명 : 서울지하철직장주택조합장 박철수 4. 사업시행기간 : '90. 5 - '91. 2. 15 5. 사업시행개요 : 폭=8m, 길이=80m 6. 허가도서 : 별첨 (생략) 7. 수용또는 사용합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인의 권리의 명세 : 별첨(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생략) 	

◎관악구고시제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44호('90. 5. 2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변경결정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

1990.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폐지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도	비 고
기 정	주 차 장	관악구 신림동 1522	961.6㎡	
변 경	-	"	0	폐 지
기 정	어 린 이 공 원	관악구 신림동 1522-1	982.8㎡	
변 경	-	"	0	폐 지
결 정	사 회 복 지 시 설	관악구 신림동 1522일대	1,944.4㎡	

나. 도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강서구고시제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28

강 서 구 청 장

다 음

1. 사 업 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 사업주체: 두보건설주식회사, (주)운성주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촌동 365번지 195호의 21필지

나. 면적: 3,604㎡

다. 규모: 아파트 4·8층 1동 64세대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0. 5. - 1991. 6. 30

◎영등포구고시제9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29.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금성가족주택조합-38명
○대신증권주택조합-38명
○대한교육보험 (주)직장주택조합-20명
○세기문화사 직장조합-20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95번지

나. 대지 면적: 4,248.90

다. 건축면적: 13,525.87

라. 규 모: 지하1층, 지상 15층

다. 사업시행기간: '90. 5. - '91. 12

●강서구고시제10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16

강 서 구 청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
2. 사업주체 : ·외무부염창동 직원주택 조합
·염창동 주택조합
·KBS 염창동 제1주택조합
·주)일우프리티션 염창주택조합
·주)삼미 직장주택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66번지1호의 10필지
나. 면적 : 19,415.23㎡
다. 규모 : 아파트 15층 1동 186세대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0. 5 - 1991. 9. 30

●송파구고시제17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변경시행허가

1. 송파구고시제10호('90. 3. 30)로 시행허가된 송파구 풍납동 388-1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변경허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5. 31.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풍납동 388-1번지의 10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송파구 풍납동 388-1 계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우영
- 라.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138,857.9㎡
건축면적 -당초 : 22,147.1㎡
-변경 : 21,981.1㎡(-166㎡)
건축연면적 -당초 : 143,589.98㎡
-변경 : 144,753.98㎡(+1,164㎡)
- 마.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86. 5. 17-'90. 12.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
- 아. 시행허가 설계도서 : 별첨(생략)

●구로구고시제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설계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86호('90. 3. 27)로 시설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34호('90. 4. 12)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허가하였다 고시합니다.

1990. 5

구 로 구 청 장

<p>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가리봉동703번지 - 독산동 1003-30번지간, 방명시 칠산동 325 번지 - 구로구 가리봉동 60-27번지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 하안교 및 칠산교 연결도로 확장공사</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장</p> <p>라. 사업시행규모 : 중로 1-111호 : B=29-34m, L=480m (하안교 연결 도로확장) 대로 3-118호 : B=29m L=940m (칠산교 연결도로 및 램프확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허가일 - '91. 7. 31</p> <p>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인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생략</p> <p>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조서 지면,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p>	<p>정에 외거 이월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증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5.</p> <p style="text-align: center;">증 량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증량구 면목동 산1-8호의 4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용마산 자연공원 조성 ○사업내용 : - 등산로 정비 - 폭2m, 길이1,240m - 휴게 시설 - 팔각정의 3종 - 체육 시설 - 칠봉의 6종 - 편의 시설 - 파교라의 6종 - 약 수 터 - 1개소</p>
<p>◎증량구고시제62호</p> <p>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증량구 면목동 산1-8호의 4 필지에 대하여 증량구공고 제59호('90. 5. 1)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 계획 공람공고 하고,</p> <p>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p>	<p>다. 사업시행면적 : 66,647㎡</p> <p>라. 사업시행자 : 증량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92년 12월 31일 까지</p> <p>바. 수용할 토지, 지면, 지목, 소유권의 명세 : 별첨조서참조</p>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지번, 지목, 소유권의 명세 조서					
지 번	지목	수용 또는 사용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중랑구 면목동 산 1-8	일야	6,181㎡	동대문구 용두동 131-1	성렬산업(주)	산1-2에서 분할
중랑구 면목동 산1-9	"	28,587㎡	"	"	"
중랑구 면목동 산49-1	"	22,976㎡	강남구 역삼동 755-4 영동(아)39동 401호	조이순	산 49번지 에서 분할
"	"		강남구 삼성동 75-3 봉은빌라 1동 303호	조용해, 조영순, 서춘석, 조용세	
"	"		수원시 정자동 296-2 백조(아) 110동 502호	조용순	
중랑구 면목동 산50-11	"	7,727㎡	서초구 서초동 124 삼호가든맨션502-601	최수철	산50-2에서 분할
중랑구 면목동 산50-12	"	1,176㎡		재무부	산 50-10 에서 분할
계 5필지		66,647㎡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46호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제469호('84. 11. 17)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2호('87. 4. 17)로 사업시행인가된 옥수 제7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기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1990. 5. 25

성 동 구 청 장

공 고 내 용

- 가. 사업명칭 : 주택개발재개발 옥수제7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 나. 사업구역 : 성동구 옥수동 2번지 일대 356필지, 28, 838, 3㎡
- 다. 시 행 자 : 옥수 제7구역 제1지구 재개발조합
- 라. 사업시행기간 : '87. 4. 17-'90. 12. 31
- 마. 사업시행내역
 - 1) 기존건물 철거 : 259동
 - 2) 주택건설 : 아파트 5-15층 8동 566세대
 - 3) 부대복리시설 : 상가, 노인정 및 관리실, 사당, 공중변소, 중앙공급실, 가버너실 각1동
 - 4) 주차장 : 5,084.0㎡
- 바. 사업비 : 25,581,798,600원
- 사. 시 공 자 : 현대건설(주) 대표 이명박

◎마포구 공고 제51호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일부 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88호('79. 10. 23)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된 아현제1주택개발 재개발구역 제3구획 일부에 대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 계획을 일부변경하고 동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동 공고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공고로 갈음하고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시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며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 및 아현1동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0. 5. 25

마 포 구 청 장

- 내 용 -

가. 공람기간 : 1990. 5. 26 - 1990. 6. 24 (30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및 아현1동 사무소

다. 공람요지

가. 사업개요

- 1) 명 칭 : 아현제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2)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 3) 면 적 : 138,860평방미터
- 4) 변경지역 : — 위 치 : 3구획 일부
— 면 적 : 654.6 평방미터
- 5) 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라. 환지 예정 변경도서 : 별첨(생략)

◎마포구공고제6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결정 지적승인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용 시행코자 도시개발법 제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5

송 파 구 청 장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거	지 권 고 시 일 자
거여동 230-1 34-6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8m L=18m	2년	서고시 제86호 ('90. 3. 27)	송파구고시 제9호 ('90. 3. 30)
거여동 34-5-223-2	"	B=4m L=110m	2년	"	"

나. 사업의 시행자: 송파구청장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목과(전화 410-340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공고제79호

도시공원 점용 허가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6-13호 및 116-15호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하고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5. 31
 동작구청장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6-13호
 나. 공원명: 한강 제1근린공원
 다. 점용자: 동작구 흑석동 54-67 송병인
 라. 점용목적: 수목 식재
 마. 점용면적: 98㎡
 바. 점용기간: '90. 1. 1 - 12. 31
 아. 관계도면: 생략

도시공원점용허가증

점용자	성명	송 병 인	주민등록번호	500494-1114313
	주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54-67		
공원의 명칭		한강 제1근린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수목 식재		
	장소 및 면적	장 소: 동작구 흑석동 116-13호 및 15호 면 적: 98㎡		
	시설규모	소나무 (3.0×1.5) 15주등 수목		
	기간	1990. 1. 1 - '90. 12. 31		
허가조건		별 침		
도시공원법 제 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허가합니다.				
1990. 5. 31 동 작 구 청 장				

사 경

◎1990년 5월 29일자 5급기술직 공무원 재발령 (직제개편) 령 제20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원 태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지 적 과	지 방 지 적 기 좌
◎1990년 6월 1일자 기술직 8급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202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황 성 기	지방보건지원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보건위생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오 금 환	지방보건지원시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보건위생과 근무를 명함.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203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지 영	지방교원원시보(기능직10등급) 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기술직 5급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205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정 원 화	지방의무기록시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신	규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령 제206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선 영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시보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급함. 시민생활과 근무를 명함.	신	규
남 기 선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시보 (기능직 10등급) 2호봉을 급함. 총무과 (대대본부요원) 근무를 명함.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김갑연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급함. 공원과 근무를 명함.	"
김은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급함. 기술심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
김선행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급함. 하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
정은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급함. 투자관리담당관 근무를 명함.	"
이정신	지방전기원시보(기능직10등급) 1호봉을 급함.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 규

◎1990년 6월 1일자 지방별정직 2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20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강홍빈	지방별정직 2급상당에 임함. 기획관리실 시정연구관에 보함.	신 규

7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 제20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채종열	세무지도과	동작구	지방행정주사보
심강유	"	성북구	"
왕관옥	노원부녀복지관	부녀복지관	"
김경식	양천구	노원부녀복지과	"
이양재	사회과	중랑구	"
전송규	마포부녀복지관	동작구	"

◎1990년 6월 4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및 파견해제

령 제20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범	환경과	강남구	지방보전기사
박영식	대통령경호실 파견해제 강남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보전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령	학	력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원		김	성 원	49		서울대학교	원			
		(수의사 5급)						(수의학박사)				
		지방보건연구원사		김	영 수	45		서울대학교	원			
		(수의사 6급)						(보건학박사)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 적				
청소년과	지방행정	사무관	임		싱가폴,	'90. 6. 10	시 비	'90년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육기		말레이시아,	- 6. 23	(2,764불)					
					대만, 일본	(14일간)						
내 무 국			김		말레이시아	'90. 6. 29	시 비	서울시 배구단 제2회 말레이시아 혼밀컵 국제배구대회 참가자 인솔				
총 무 과			춘식			- 7. 9	(1,070불)					
						(11일간)						
	지방행정	주사보	신									
			경원									
서 율 특 별 시												